

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·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6월 9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5월 31일, 이인식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5월 31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6월 9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」의 제정에 따른 내용 정비 및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을 반영하여,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체계적·효율적 추진을 통해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(안 제1조 ~ 제3조)
-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(안 제4조)
- 시행계획의 수립 및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(안 제5조 ~ 안 제12조)

- 사업비 지원 및 2차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(안 제13조 및 제14조)
- 관련정보의 제공 및 비밀준수 의무(안 제15조 및 안 제1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본 전부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 등 정책 여건을 반영하고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2)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(안 제1조 ~ 제3조)
 - 제명 변경
 - :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(안 제4조)
- 시행계획의 수립 등(안 제5조 ~ 안 제12조)
- 사업비 지원 및 2차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(안 제13조 및 제14조)
- 관련정보의 제공 및 비밀준수 의무(안 제15조 및 안 제16조)

다. 검토의견

-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, 가정폭력 관련 강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폭력 예방 및 안전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종합적 체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임

- 여성보호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지원 및 시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,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3조, 제4조와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,
-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체계적 제도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은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